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지원비 지원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원 규정

제정 2021.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동·하계)에 출전하는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투명성 있는 우수선수 선정 및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선수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라고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기력향상육성비' 라고 한다.

제3조(자격기준) ①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 출전이 가능한 선수(부산대표 선발 이후는 출전선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로 한다.

1. 국가대표선수
2.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3. 해당종목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4. 전국체육대회 및 해당종목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지만 신체조건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
5.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수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선수
6. 부산 연고 선수 중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
7.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② 지급대상자는 개인 및 개인·단체 종목(개인전이 있는 종목 포함)을 우선한다.

제4조(지급 구분 및 대상) 경기력향상육성비는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우수선수

2. 훈련보조금 :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 출전하는 우수선수(국군체육부대·의무경찰 소속 선수, 대학·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등 포함)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절차)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의 후보자 추천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장과 본회의 회장이 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단, 회원종목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차기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경기력향상육성비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본회 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회원종목단체장 추천서 1부
5. 기타 경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7조(지급기준) 경기력향상육성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는 우수선수 일시지원금 및 성과수당(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기간)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기간은 선정기준월로부터 당해년도 12월 까지로 하며, 총 지급액을 월단위로 나누어 매월 1회씩 지급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는 지급기간 중이라도 중지 및 취소 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우리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
2.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선수
3.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경기실적이 저조한 선수
4. 부산체육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선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수
5. 각종 민원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선수
6.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지 및 취소 요청이 있는 자

7. 본회에서 시행하는 신상관리 및 훈련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자

제10조(관리) 본회는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 훈련점검 및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기력향상에 매진하여야 하며, 본회 사무처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시행한다.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별표1]의 기준은 2022년 선정되는 선수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기준 (제7조 관련)

1. 장학금(고등부, 대학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지급액(년)	비고
1등급	·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50점 이상인 선수	8,000,000	성적은 지급년도 직전년도를 우선으로 한다.
2등급	·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5,000,000	
3등급	·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이상을 획득한 선수 ·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개인단체종목 중 전국체육대회 대학·일반 통합종목에서 개인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3,000,000	
4등급	·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기타 기량이 우수하여 전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증명서 첨부)	2,000,000	

※ 고등부는 4등급 지급액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선수는 별도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훈련보조금(일반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지급액(년)	비고
1등급	· 전국체전에서 300점 이상 획득한 선수	50,000,000 ~ 30,000,000	성적은 지급년도 직전년도를 우선으로 한다.
2등급	· 전국체전에서 299점 이하 250점 이상 획득한 선수	29,900,000 ~ 25,000,000	
3등급	· 전국체전에서 249점 이하 200점 이상 획득한 선수	24,900,000 ~ 20,000,000	
4등급	· 전국체전에서 199점 이하 150점 이상 획득한 선수	19,900,000 ~ 15,000,000	
5등급	· 전국체전에서 149점 이하 100점 이상 획득한 선수	14,900,000 ~ 10,000,000	
6등급	· 전국체전에서 99점 이하 50점 이상 획득한 선수	9,900,000 ~ 5,000,000	
7등급	· 전국체전에서 49점 이하 30점 이상 획득한 선수	4,900,000 ~ 3,000,000	

※ 해당종목 운동부 소속으로 중·고등학교를 모두 부산에서 졸업한 선수는 지급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훈련보조금과 옵션을 합한 금액은 10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종목 운동부 소속으로 중·고등학교를 모두 부산에서 졸업한 선수는 120,0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금메달 200점 미만 종목 중 개인토너먼트 종목(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은 지급등급에서 1개 상위등급 최저 지급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은·동메달 중 메달 점수가 동일한 등급인 경우 상위 메달점수 지급액은 지급등급의 1개 상위등급 최저 지급액에 2,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최고 4등급까지만 지급하며, 1개 개인종목 성적만을 적용한다.
- ※ 훈련보조금 지급은 “목표성과관리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지급액 80%를 선지급하고, 미지급 20%의 지급액에 기준 성적에 따라 전체금액의 20% 가감하여 지급한다.
- ※ 체육회의 요청 및 협약에 따라 창단한 실업팀은 협의·협약 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선수는 별도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우수선수 일시지원금

(단위 : 원)

구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비 고
대학선수	일시지원금 지급년도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동계체육대회) 참가요강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대학부 또는 대학일반부 통합 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 대학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지원기준의 150% 범위 내 지원가능	지급액 10,000,000원 이하 · 전국체전을 우승하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한 선수 · 전국체전에서 2관왕이상 입상선수 ·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 아시안게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성적은 지급년도 기준으로 직전년도를 우선으로 한다.
		지급액 5,000,000원 이하 · 전국체전 우승 선수 · 전국체전 2위 입상하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한 선수 · 전국체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지급액 3,000,000원 이하 · 전국체전에서 2위에 입상한 선수 · 전국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한 선수 · 최근 3년 이내 해당종목 국가대표, 상비군, 주니어대표를 역임한 선수	
실업선수	일시지원금 지급년도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동계체육대회) 참가요강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지급액 20,000,000원 이하 · 전국체전 우승 선수 · 전국대회 3회 이상 우승한 선수 · 종목별 아시아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선수 (최근 2년 이내) · 현)국가대표 선수	성적은 지급년도 기준으로 직전년도를 우선으로 한다.
		지급액 10,000,000원 이하 · 전국체전 2위 입상 선수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한 선수 · 최근 3년 내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주니어대표를 역임한 선수	
		지급액 5,000,000원 이하 · 전국체전 3위 입상 선수 · 전국대회 1회 이상 우승한 선수 · 경기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선수로써 입상이 예상되는 선수	

- ※ 매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을 부산소속으로 획득한 선수는 최근 3년간 성적기준으로 지급액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국가대표(상비군, 주니어대표) 경력은 제외한다.
- ※ 다년계약 선수는 지원기준 지급액에 계약 연수를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선수는 별도심의를 통해 결정한다.